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62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정일영의원안, 정성호의원안, 윤호중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3

I. 개요

1.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036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일영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6. 12.
- (3) 회 부 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자녀양육비로 97만 6천원이 지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이 협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행 과세체계에 따르면 연봉 5,000만 원이 넘는 직원이 출산하여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시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약 3,8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의 출산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전액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정일영의원안, 정성호의원안, 윤호중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일영의원안	정성호의원안	윤호중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제12조제3호머목)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급여(한도: 월 20만원) ☐ <신 설>	☐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급여(한도: 월 20만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 후 3년 안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급여(한도: 월 20만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급여(한도: 월 20만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급여	☐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급여(한도: 월 20만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사용자로 부터 최대 2회에 걸쳐 지급 받는

현 행	정일영의원안	정성호의원안	윤호중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종교인소득도 동일하게 적용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 적용례: 2024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 종교인소득도 동일하게 적용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법률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u>급여 전액</u> *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 받은 급여를 포함하고, 사용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지급 받은 급여는 제외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법률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일영의원안 2024. 6. 12. 제출(의안번호 362), 정성호의원안 2024. 6. 13. 제출(의안번호 442), 윤호중의원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08),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18),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67)

□ 5건의 개정안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를 비과세하려는 것으로,

정일영의원안은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 후 3년 안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전액”을, 정성호의원안은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를, 윤호중의원안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정부안과 정태호의원안은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사용자로부터 최대 2회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을 각각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일영의원안과 윤호중의원안은 종교관련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출산 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은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을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는 2003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20년간 변동 없이 10만원의 비과세한도가 유지되다가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현행 및 개정안 비교]

비과세 한도	현행	정일영 의원안	정성호 의원안	윤호중 의원안	정부안, 정태호 의원안
출산 관련 급여	월 20만원	<u>급여 전액</u> (출산 후 3년)	<u>대통령령</u> <u>으로</u> <u>정하는</u> <u>급여</u>	<u>급여 전액</u>	<u>급여 전액</u> (출생 후 2년, 자녀당 최대 2회)
6세 이하 자녀 보육관련 급여		월 20만원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한도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¹⁾이 2017년 1.05명 수준에서 2023년 0.72명 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²⁾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1) 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2)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OECD평균
0.81	1.66	1.53	1.58	1.80	1.30	1.58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5	0.97	0.91	0.84	0.81	0.78	0.72

자료: 통계청

둘째,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직원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 00기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기업 내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출산장려금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종합과세하게 되면 수령액 중 상당 부분을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어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의 노력이 퇴색되고 지원금을 수령한 근로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음.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기업, 국민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일부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셋째, 종합소득세율과 증여세율의 차이에 따른 탈세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출산지원금은 기업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구매력과 담세력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근로소

득에 해당함.

그런데 최근 낮은 비과세 한도(월 20만원)와 높은 종합소득세율(6%~45%) 회피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아닌 자녀에게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1억원 이하 10%)를 부담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현행 법령 하에서는 사용자가 조세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출산한 근로자에게 보수의 형태가 아닌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증여라는 변형된 형태로 출산장려금이 지급될 유인이 크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출산지원금이 적합한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세제 혜택이 대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비롯한 고소득층에 집중될 우려가 있음.

2022년 기준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소득자는 47만 2,380명으로 전체 과세대상 근로소득자의 2.3%에 불과하였고 1인당 평균 비과세분 신고액도 67만 9,000원으로 전체 한도액 120만원³⁾의 56.6%에 불과하였음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출산·양육수당을 지급한 기업 중 500인 초과 기업은 56%에 달하는 반면, 30인 이하 기업 비중은 18%에 불과함.

3) 2022년에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한도가 연 120만원(월 10만원)이었음

4) 국세통계포털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과세대상근로소득)

이처럼 출산지원금 비과세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는 직원의 복리후생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투자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더라도 현행 비과세 한도에 미달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세제혜택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⁵⁾는 세부담에 변화가 없는 반면, 대기업에 재직 중인 고연봉자 등은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른 수혜를 받게 되어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둘째, 비과세 한도를 폐지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의 기본원칙 및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음.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만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세제상의 우대조치로서 비과세소득을 규정할 수 있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 요건과 한도를 신중히 검토하여 비과세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낮은 합계출산율을 극복하고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비과세 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다른 세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저소득 면세자는 2022년 33.6%로 조사됨(귀속연도 기준)

(2014) 48.1% (2015) 46.8% (2016) 43.6% (2017) 41.0% (2018) 38.9% (2019) 36.8% (2020) 37.2% (2021) 35.3%

셋째,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과세대상 소득을 출산장려금으로 대체지급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행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으로 규정하면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중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의 경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대부분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은 전액 과세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급여는 연 240만원까지, 급식수당은 월 2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함⁶⁾.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기한(2년) 및 횟수 제한(2회) 외에 별다른 조건 없이 지급받은 장려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

6)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② 법 제1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여하고 있어, 현행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수당 등을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임.

참고로 국세청은 출산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 비과세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넷째, 비과세 한도 폐지에 따른 세수감면 규모의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정부는 2022년 연간 신생아 수와 2021년 대기업 종사자 비율 등을 감안하여 정부안에 따른 세수감 효과가 연 평균 329억원 발생할 것이라고 추계하였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정일영의원안과 정성호의원안에 대하여 자녀 출산으로 인해 사용자로부터 추가적인 급여를 받는 인원수 및 1인당 추가적인 급여액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 추정이 어려워 세수효과 추계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비과세 한도를 특정하지 않고 출산 관련 급여 전액으로 확대할 경우 출산급여의 비과세 정도를 사실상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가 정하게 되어 세수감면 규모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개정안별 비용추계 결과 비교]

추계주체	추계대상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 평균
정부	정부안	△329	△329	△329	△329	△329	△1,645	△329

추계주체	추계대상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 평균
국회 예산정책처	정일영의원안	세수효과 추계 곤란 (출산에 따라 추가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 인원수 및 1인당 추가 급여액 추정 곤란)						
	정성호의원안							
	윤호중의원안, 정태호의원안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문 의 처

02)6788-5154